

- ▶ 2018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호(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보호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보훈처 검색



2 예우보상 클릭



4 제목에서 알고싶은 사항 클릭 조회



3 보훈대상 또는 지원안내 중 선택 클릭



1:1 보훈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1577-0606



대부금 상황, 잔액 등이 궁금하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1577-0301

5·18민주화운동단체 전화번호는?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사)5·18구속부상자회 |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062-383-1518 | 062-383-5181 | 062-383-5180

친절·불친절 및 비리신고센터 | **044-202-5054~5**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전 공무원은 민원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작은 두드림이 큰 울림으로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



친절·신속·편리·공정한 서비스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따뜻한 보훈

대한민국의 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거울이며, 내일을 만드는 토양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일구는 귀중한 자산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복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보훈'이 함께 합니다.



02
0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자녀,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 ▶ '16. 6. 23. 신규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
- ▶ '16. 6. 23. 이후 신규등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2~14등급)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
 -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전학) 또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간 지급액: 중학교 124,000, 고등학교 144,000(인문계), 186,000원(전문계)을 2회(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
- ※ 재학 중 신규로 5·18민주유공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부대학 미실시)
 - 가까운 보훈청이나 인터넷 '민원24'에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
 - 보훈대상자 특별전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
-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 재학 중 신규로 5·18민주유공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이 면제됩니다.
 - 일반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면제기간

| 2년제 대학 | 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5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
|--------|--------|--------|--------|--------|
| 4학기 | 6학기 | 8학기 | 10학기 | 12학기 |

-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

|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
| 면제학점 | 84학점 이하 | 126학점 이하 | 168학점 이하 |

-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는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없음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입학학기 제외)만 면제되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
-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 학습보조비는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6,000원을 2회(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
 - ※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 있음(보훈관서 문의)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 관할 보훈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다음과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
 -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보조비(4월 15일, 10월 15일) 지급
 - 연간 지급액 : 유치원·초등학교 534,000원, / 중·고등학교 718,000원
 - ※ 특수교육대상자 외에는 중학교부터 교육지원이 실시됩니다.

장학금은 없나요?

-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 : 4월초 및 9월초 2주간
- 신청 장소 : 재학 중인 학교를 관리하는 보훈청
- 신청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자(행불자) 배우자로 직전학기 평균 90점 이상
 - ※ 지원 제외 : 신입학 학기 및 논문학기 재학생, 해외유학·원격대학원생, 6회 기 수혜자, 동등과정 수혜자
 - 특수 장학 :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 제출 서류
 - 대학원 장학 : 보훈장학신청서 1통, 재학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
 - 특수 장학 : 보훈장학신청서 1통
-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최고 1,150,000원
 - 특수 장학 : 300,000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 ▶ '16. 6. 23. 이후 신규등록한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급 이하 자녀 및 그 밖의 5·18희생자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
- ▶ '16. 6. 23. 이후 신규등록자의 장애등급 11급이상 및 5·18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의 자녀인 경우, 자녀는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알선 횟수도 3회로 제한(가점지원 제한 없음)

채용시험 시 가점(10% 또는 5%)을 드립니다

-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읍·면·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첨부
 - 6급 이하 공무원 시험: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하면 가산되며,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반드시 채용시험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 가점내용
 - 5·18민주유공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유족: 1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희생자의 가족: 5%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통,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
-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
- ※ 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단 2016. 11. 30. 이후 취업희망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만 38세까지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
 - 운전직·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http://job.mpva.go.kr>)에서 취업수강료 지정교육기관 확인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사전동의서,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세요.(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관할 보훈청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
- 학습 진도율 70% 이상(수강기간 2/3 이상)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구비서류: 수강완료 확인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
-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70%) 입금
 - 1인당 지원한도액: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000,000원 (연간 1,000,000원)
 - 유·가족 총 1,500,000원 (연간 500,000원)
- 지원기간: 제한없음
- ※ 단, 취업지원자,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
- ※ 수강료 외 시험응시료, 교재비는 미지원

취업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 워크넷정보, 취업수강료 지원, 이력서 작성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접속경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하단 "취업정보시스템 배너" 또는 사이트 주소 (<http://job.mpva.go.kr>)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감면 내용
 - 국비진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60%감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및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의 유족
 - 50%감면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30%감면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 ※ '16. 6. 23.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모모두)에 한함
- ※ '16. 6. 23. 이후 신규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애등급 12~14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10% 본인부담
- 보훈병원 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진항도로 61길 53(☎ 02-2225-1111)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백양대로 420(☎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월곡로 60(☎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로 82번길 147(☎ 042-939-0111)
 - 보훈요양병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진항도로 61길 53(☎ 02-2225-1123)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 받을 수 없나요?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가까운 위탁병원 확인 후,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퇴원 후 관련서류를 보훈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 ※ 14일 경과 후 통보시 역산하여 14일 되는 날부터 지원
-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감면해드려요

- 유공자 또는 유·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신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관할 보훈청)
 - 보철구 수명 등을 고려한 연도별 지급계획에 의함
 - 유공자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품목 희망여부를 우편으로 안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지급신청에 따라 해당 보철구 지급
 - 철 크러치, 목발, 지팡이, 시각장애인 보철구(맹인용 시계, 흰지팡이) 5종은 관할 보훈청에서 탁송 또는 보훈청에 방문시 지급
 - 기타 품목은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에서 지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만 해당되며,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각각의 지원을 다른 차량에 분리하여 적용 불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

○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5·18민주공자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세요.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 면제요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유의사항

-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면제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잔여기간에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배기량 제한없음
- 지역개발사업지방채(배기량 제한 없음) : 지역마다 혜택이 다름

○ LPG 차량으로 구입 또는 개조를 희망하신다면?

- 방법 : 자동차영업소에 5·18민주공자증 사본을 제출(구입·개조비용 지원은 없음)
- 요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

○ 자동차 표지는 일반용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가까운 보훈청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 일반표지 발급대상(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 일반표지 발급대상이면서, 장애등급 1~3급은 전원, 4~7급은 상이 호수에 따라 적용(자세한 사항은 보훈청 복지과로 문의)

○ 자동차표지를 수령하여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시) : 50~80%

○ 공항 주차장 사용자 할인 : 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시에 한하며, 5·18민주공자증 제시 필요

- ※ 보철용차량 사용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께서 작고하시면 가까운 보훈청에 정지신고를 하셔야 하며, 주차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 보철용차량 등록은 동주민센터와 중복 신청이 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보철용차량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가 80% 할인됩니다.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장애 1~5급은 면제, 장애 6~14급은 50%할인)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중 1대
- 자동차 표지 부착 및 유공자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합복지카드 제시

▶ **감면행복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제조사 휴먼케어(1688-3017)를 통해 구입하여 가까운 보훈청에서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 LPG 차량은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

–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시 월 300ℓ 까지 ℓ 당 220원 할인

- ※ 50ℓ 추가신청 가능한 경우 : 사업장·직장·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이상인 경우(1일기준)

– LPG차량 사용 중 유공자가 사망하시면

- 복지카드사용 즉시 정지, LPG차량은 승계(상속)에 따라 매매 또는 폐차할때까지 사용 가능

○ 지하철·시내버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예금통장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진(3.5×4.5cm)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30일정도 소요)

– 신용카드 기능(시중 모든 은행계좌 가능) / 직불카드 기능(신한은행, 우체국계좌 만 가능)

※ 기존 고속도로통행카드와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가까운 보훈청에 교체신청

LPG 세액보조금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애기능 보안을 위한 보철용 LPG차량에 대하여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것

※ 본인만 사용해야 함(리터당 220원 할인 / 월 300리터 한도내 사용 가능)

※ 유공자 사망, 세대변리, 해외체류, 차량매각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LPG보조금 정지, LPG 할인가는 정지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1회 : 3개월~1년 / 2회 : 2년 / 3회 : 3년 / 4회 이상 : 5년)

5·18민주유공자와 수권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아파트특별공급(분양, 임대)을 받고 싶습니다

-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보존관서에 문의)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월 초(접수기간은 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 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보호청에 신청하세요.
 - 주택우선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정보동의서(동의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 무주택입증서류 : 현주소지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 주민등록등본 1통

※ 연중 신청은 받고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

- 신청 후에는?
 - 배정기준(무주택 기간, 학생 및 공헌도, 전년도 탈락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 순위를 결정
 -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

※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분양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간접자금이 필요한데...

-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 주택구입(신축)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경우
 - 주택임차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수권자 본인 명의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
 - 주택개량대부 :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
 - 사업(창업)대부 : 본인,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
 - 생활안정대부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종류 및 조건

| 구분 | 대부한도액 | 연이율 | 상환기간 | 담보조건 |
|----------------------|---------------------|-----|---------------|--|
| 아파트 | 분양 3,000~6,000만원 | 연2% | 20년균등 |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시 부동산,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 |
| | 임대 2,000만원 | 연2% | 7년균등 | 부동산·연대보증인 |
| 주택구입(신축) | 3,000~6,000만원 | 연2% | 20년균등 | 구입(신축)주택 |
| 주택임차 (전·월세) | 1,500~4,000만원 | 연2% | 7년균등 | 부동산·연대보증인 |
| 주택개량 | 600만원 | 연3% | 7년균등 | 부동산·연대보증인 |
| 농토구입 | 2,500만원 | 연3% | 3년거치 10년균등 | 구입농토 |
| 사업(창업) | 2,000만원 | 연3% | 7년균등 | 부동산·연대보증인 |
| 생활안정 (보철용 차량 구입시) | 300만원 (1,000만원) | 연2% | 3년균등 | 부동산·연대보증인 |

- 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호청에 문의하세요.(예산 범위 내에서 보호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던데...

- 대부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보호청 대상자는 관할 보호청)에서 '조세면제(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
 - 취득세 면제(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
 - 농 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
 -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면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 관할 보훈청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 제외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 대상결정 : 생활수준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
 - 서비스지원 : 보훈شم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 주1~2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
 - 5·18민주유공자본인, 수권배우자 및 수권부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
 -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현금
 - 부상자 : 본인부담액의 80% 지원
 - 희생자, 수권 배우자, 수권 부모 : 본인부담액의 40% 지원(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소하고자 하는 보훈요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 일부 감면
 - 감면대상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유족(부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감면율
 - 부상자 : 본인부담액의 80% 감면
 - 희생자 본인, 배우자 및 유족(부모) : 본인 부담액의 40% 감면(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인 경우 60%)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 신청대상 : 5·18 유공자 및 수권유족(자녀 제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남자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부상자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입증 서류 필요
-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보호,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
- 입소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보훈원에서 확인 및 접수 진행합니다.
 - ※ 보훈원 031-250-1521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어요

- 신청대상 : 65세 이상인 5·18유공자 및 수권유족(자녀 제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고, 무주택자로 거동이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 (배우자의 경우 남자 60세, 여자 55세)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입증 서류 필요
-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입소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보훈원에서 확인 및 접수 진행합니다.
 - ※ 복지타운 031-250-1562
- 임대보증금 : 8평형(독신세대) 150만원, 13평형(부부세대) 250만원 관리비 별도



5·18민주부상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수권 유족은 국내선 항공기만 30% 할인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송시설 | 이용방법 | 지원내용 | 감면율 |
|----------------|--|---|--------------------------|
| 기차 | · 대표창구에 5·18민주유공자증 제시 → 승차권 교부 | · KTX, SRT 등 전 차종 이용가능 · 장해등급 1~2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연간 무임 6회(승차일 기준, 50% 할인(무제한) · 특실 제외 | 무임 6회 50% 할인 (무제한) |
| 지하철 | · 복지카드 사용(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충남지역 / 단 지역간 호환 안됨) · 무인 발권기에 5·18민주유공자증을 접촉시켜 1회용 우대권 발급(보증금 500원 필요) | · 장해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무임 (1~14급) |
| 공항철도 | · 복지카드 사용 또는 · 대표창구에 5·18민주유공자증 제시 → 승차권 교부 | · 장해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직통열차는 제외 | 무임 (1~14급) |
| 시내버스 | · 복지카드 사용(수도권, 부산지역, 대구, 울산, 광주 / 단 지역간 호환 안됨) · 수송시설용 5·18민주유공자증서(골드색) 제시 | · 장해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광역, 좌석, 마을버스 제외 | 무임 (1~14급) |
| 시외버스 (농어촌) | · 대표창구에 수송시설용 5·18민주유공자증서(골드색) 제시 | · 장해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해등급 1~7급은 농어촌버스 무임 | 70% (1~7급) |
| | | | 30% 할인 (8~14급) |
| 고속버스 (우등고속) | · 대표창구에 수송시설용 5·18민주유공자증서(골드색) 제시 | · 장해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 50% 할인 (1~7급) |
| | | | 30% 할인 (8~14급) |
| 내항 여객선 | · 대표창구에 승선이용권과 5·18민주유공자증 제시 | · 육저거주자 연 6회 · 도서거주자 연 12회 · 장해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승선이용권은 보훈청에서 발급 → 방문·우편·전화 신청 | 무임 (1~7급) |
| | | | 50% 할인 (8~14급) |

| | | | |
|------------|---------------------------|--|--|
| 국제 여객선 | · 대표창구에 5·18민주유공자증 제시 | · 한국 ↔ 중국 및 일본간 일부 선박회사 · 한국에서 발권한 승선권에 한정함 · 일부 노선의 경우 선사별 차이 | 객실요금 20% 할인 (1~14급) |
| 국내선 항공기 | · 대표창구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제시 | · 5·18민주부상자의 공항이용료 50% 할인 → 티켓 발권 시 포함 (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 단 대한항공은 동반가족 할인 없음) * 저가항공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할인을 별도 확인 필요 | 50% 할인 (1~14급) 30% 할인 (희생자 및 수권 유족) |
| 국제선 항공기 | · 대표창구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제시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 별도문의) | 10% 할인 (1~14급) |



그 밖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요 | 복지과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
 - 보훈청에서 국민안전처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재해발생 신고서 제출 및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소방서, 경찰서 또는 시·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지급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급

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제시 필요,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그외지원 > 협약콘도 이용안내 참조

- 보훈휴양원 이용방법
 - 총주 보훈휴양원 연중 이용 가능
 - 예약문의 : ☎ 043-854-2121 또는 <http://condo.bohun.or.kr>
- 대명리조트 이용방법
 - 11개 체인콘도 비수기 주중 이용 가능(주말, 성수기 요금 별도 문의)
 - 예약방법 : www.daemyungresort.com에서 전용번호(49134101-000000,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로그인 하여 인터넷 예약
- 일성리조트 이용방법
 - 7개 체인콘도 주중 및 주말 이용 가능(주말, 성수기 요금 별도 문의)
 - 예약문의 : ☎ 1566-8113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이용방법
 - 충북 제천 소재, 비수기 주중·주말 이용가능(주말·성수기 요금 별도문의)
 - 예약문의 : ☎ 043-640-7000
- 한화리조트 이용방법
 - 12개 체인콘도 주중 및 주말 이용 가능(주말, 성수기 요금 별도 문의)
 - 예약방법 : www.hanwharesort.co.kr에서 쿠폰번호, 성명, 휴대폰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여 인터넷 예약(※쿠폰번호는 수시 변경으로 보훈청에 문의)
- 주문진리조트 이용방법
 - 강원 강릉 주문진 소재, 비수기 주중·주말 이용가능(주말·성수기 요금 별도문의)
 - 예약문의 : ☎ 033-661-7400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개인택시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름
- 관할 보훈청에서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신청
 -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5·18민주유공자(수권 유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에게만 발급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 시설 이용 시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5·18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상이 1~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수권유족 단, 수권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100% 감면시설 :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50% 할인시설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세금공제 혜택 - 5·18민주부상자

| 구분 | 감면 내용 | 감면방법 |
|-----------------|--|-------------------------|
|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 | · 연말 소득정산 시 200만원 추가공제 |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원 제출 |
|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 ·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19. 12. 31. 까지 가입) | |
| 상속세, 증여세 | · 상속세 인적공제 ·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 |

※ 부양가족공제는 유공자본인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하여야 함.

증명발급 수수료 등 면제 - 5·18민주유공자 및 수권 유족

| 구분 | 감면율 | 감면방법 |
|--|-----|-------------------|
|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인간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 면제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제시 |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 - 5·18민주부상자

| 구분 | 감면 내용 | 감면방법 |
|--------------------------------|--|--|
| TV 수신료 면제 | · 면제(월 2,500원)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한전고객센터(123)으로 신청 |
| 전기요금 할인 (장해 1~3급만 해당) |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만6천원 한도 감면 (하계(6. 1~8. 31):월 2만원 한도) | 한전고객센터(123)으로 신청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해 1~3급만 해당) | ·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 취사용 매월 1,680원 감면 |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도시가스 고지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 지역난방에너지 요금 면제 (장해 1~3급만 해당) | · 월 5천원 감면 (연1회 감면총액 일괄 소급 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관할지역에 한함. | 신청서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에 팩스로 신청(Fax, 031-705-4231, 4236) |
| 전화요금 감면 | · 시내·시외통화료 50% 할인 (시외는 3만원 범위내) | 해당 전화국(통신사)에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제출 |
| 이동 전화요금 감면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사용료의 35% 할인 | 해당 통신사 지점에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제출 |
|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 · 인터넷 통신요금 30% 할인 | 해당 통신사 지점에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제출 |
| 인천공항 Fast Track 서비스 | · 5·18민주부상자 본인(동반 3인 포함) | 5·18민주유공자증 제시 |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 감면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 문의 후 가입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하세요



①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검색



② 묘지선택 후 안장신청 클릭



③ 신청서 작성 후 신청 클릭

- 신청 후 기다리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장 대상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유족 희망일자에 안장이 실시됩니다. 다만,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이 불가할 수도 있음
 - 사망진단서를 준비하여 보훈청을 방문하시면 영구용 태극기를 드립니다.(전화로 신청하시면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림)
 - 영구용 태극기는 입관 후 덮고 장례 시 소각 또는 별도 보관
 - ※ 영구용 태극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음
- (단,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공사완료 시 재오픈 예정)

배우자를 합장하려면...

-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묘지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립5·18민주묘지 : 광주시 북구 민주로 200 (T. 062-268-0518)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

- 안장식 일정을 국립5·18민주묘지와 협의하여 정하시고,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화장증명서 1부
- 협의된 일자에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설묘지에 안장했는데 묘비를 세우고 싶어요

- 묘비 설치 후 3년 이내 관할 보훈청에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비석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 신청인(수권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4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비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 묘비제작비는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한 경우에만 지원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사망자 및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선순위자의 반명함판(3x4cm) 사진 1매, 신분증, 도장
 - 승계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권리 승계
-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리시면,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5·18민주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수권 대상여부를 알려드리며,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그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명의로 지원되던 수혜(교통시설 이용, 차량지원, 보철구 등) 외에 가족으로서 받던 수혜는 유지됩니다.
 -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복지지원, 고궁 무료이용 등 지원
- ※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승계된 수권자의 생활정도에 따라 수혜의 승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꼭!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

-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또는 국적 상실
 - 본인의 결혼 · 재혼(배우자 포함) · 이혼 · 자녀출생 · 입양 등으로 친족관계가 발생 · 소멸된 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
 - 5·18민주유공자(수권 유족)의 주소 변경
 - 5·18민주유공자가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신설

-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국가가 장례서비스 지원 (1인당 200만원 상당)
 - ※ 계약체결된 상조업체를 통해 인력 및 장례용품 지원(장례지도사, 수의, 상복, 관, 장의차량 등)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반드시 '장례기간' 중 유족 신청



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 기관명 | 관할 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지방보훈청 |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02)3785-0815 |
| 서울남부보훈지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 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02)3019-2300 |
| 서울북부보훈지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02)944-9260 |
| 경기남부보훈지청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화성시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031)259-1702 |
| 인천보훈지청 | 인천광역시, 부천, 광명, 김포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2 (032)430-0100 |
| 경기북부보훈지청 | 의정부, 동두천, 구리,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양평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031)843-5748 |
| 경기동부보훈지청 |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031)289-2302 |
| 강원서부보훈지청 | 춘천, 원주,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횡성 | 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033)258-3609 |
| 강원동부보훈지청 |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고성, 양양, 정선, 평창, 영월 |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033)610-0640 |
| 대전지방보훈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042)280-1114 |
| 충남서부보훈지청 | 아산, 보령,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서천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041)630-3700 |
| 충남동부보훈지청 |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길 19 (041)589-4900 |
| 충북남부보훈지청 | 청주, 진천, 청원, 보은, 영동, 옥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043)285-3213 |
| 충북북부보훈지청 |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증평 | 충북 충주시 증원대로 3230 (043)841-8801 |

| 기관명 | 관할 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
| 대구지방보훈청 | 대구광역시, 상주, 김천, 구미, 경산,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청도 |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230-6010 |
| 경북북부보훈지청 |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의성, 영양, 청송, 예천 | 경북 안동시 마들큰길 21 (054)820-9310 |
| 경북남부보훈지청 |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 | 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054)778-2600 |
| 부산지방보훈청 | 부산광역시 |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051)469-8991 |
| 울산보훈지청 | 울산광역시, 양산 |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052)228-6500 |
| 경남동부보훈지청 | 김해, 창원, 밀양, 거제, 창녕, 의령, 함안 |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055)981-5600 |
| 경남서부보훈지청 | 진주, 사천, 통영, 남해, 하동, 고성, 함양, 거창, 합천, 산청 |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055)752-3881 |
| 광주지방보훈청 |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강진, 장흥, 해남, 완도 | 광주 북구 침단과기로208번길 43 (062)975-6500 |
| 전남동부보훈지청 |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 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061)720-3200 |
| 전남서부보훈지청 | 목포, 무안, 영광, 진도, 함평, 신안, 영암 |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061)273-0093 |
| 전북동부보훈지청 | 전주,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무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063)239-4500 |
| 전북서부보훈지청 |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 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5 (063)850-3702 |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청사로 59, 3층 (064)710-8411 |

MEMO

Two column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26
27

